

# 다문화 사회의 통합관점에서 바라본 간문화 갈등과 간문화 중재\*

허영식\*\*

목 차	
I. 서론	IV.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문화와 간문화 중재
II.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문제: 갈등의 역설	V. 결론
III. 다문화 사회와 간문화 갈등	

| 논문요약 |

이 글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 관점에서 간문화 갈등 및 간문화 중재의 개념과 함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갈등이론을 기초로 삼아 간문화 갈등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어서 간문화 갈등을 다루기 위한 정책으로서 갈등문화 및 그 주요수단인 간문화 중재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문화 사회로서의 현대사회는 ‘갈등의 역설’이라는 특징을 안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강력한 갈등을 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둘째,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간문화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기능성·역기능성, 그리고 평화로운 갈등해소나 정치적 갈등문화를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적·제도적 조건에 관한 의제와 핵심명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간문화 갈등과 관련해서는 민족적·문화적 차이 및 다양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힘의 격차를 둘러싼 인정의 문제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04).  
 \*\*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갈등문화와 관련해서는 갈등문화의 양면성을 고려하고, 근본적인 토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문화의 주요수단인 간문화 중재와 관련해서는 간문화 중재 모형과 간문화 중재 능력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시야를 확대하여 간문화 개방·다양성 관리·차별 철폐에 대한 담론 및 사업과의 연결고리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다문화 사회, 사회통합, 간문화 갈등, 갈등 문화, 간문화 중재

## I. 서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논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다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독일의 사회학자 짐멜(Simmel)은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갈등의 필요성·불가피성·기능성에 관한 사회과학적 논의를 위하여 단초를 제공하였다. 생의 철학에 대한 그의 친화성을 배경으로 하여 정식화된 그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개인·집단·사회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일단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갈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갈등이나 지나치게 강한 갈등은 개인적·집단적 발전과정에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늘 갈등에 처해 있는 집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존속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적 갈등과 역기능적 갈등 사이의 구분은 갈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토론과 연구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것은 특히 사회과학에서 갈등이론의 의제(agenda)라고 지칭할 수 있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이 의제는 특히 논쟁에 관한 짐멜의 명제와 (계급)갈등에 기반을 둔 사회발전에 관한 마르크스(Marx)의 명제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왜 현대사회가 구조적으로 갈등을 안고 있는

가를 이해하는 일이고, 갈등의 기능성(생산적 측면) 및 역기능성(위협적 측면)과 관련된 제도적·구조적 조건을 명료화하는 일이다. 특히 이해관계·가치·정체성을 고려할 때 다원적이고 다문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갈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거나 처리하는 일이다. 이 맥락에서 갈등문화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 그것은 이의(모순)의 기대와 다른 신념의 인정을 기반으로 하여, 물리적 힘(혹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물리적 힘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사회과학을 위해 제기되는 질문은 다문화 사회에서 그러한 갈등문화를 확립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대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가이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것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평화로운 갈등해소 혹은 정치적 갈등문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제도적 조건에 관한 바로 이 질문이 갈등이론의 의제에서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Bonacker 2009, 12-13; Mayer 2008, 27).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관점에서 간문화 갈등과 간문화 중재의 개념 및 그 함의를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이른바 ‘갈등의 역설’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문제에 관해 간단히 언급한다. 이어서 이론적 기초로서 갈등이론을 염두에 두면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간문화 갈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 다음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간문화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한 방책으로서 갈등문화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 예시적 차원에서 그 주요수단의 하나인 간문화 중재에 관해 좀더 자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마지막 결어부분에서는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 Ⅱ.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문제: 갈등의 역설

현대사회가 통합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데 있어서는 사회과학적인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관한 토론에서도 역시 종종 조직원칙으로서의 관용, 상호존중과 인정 따위가 시민사회의 정서적인 기초로서 거론되고 있으며, 사회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공동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민주사회의 정치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다섯 가지의 근본적인 가치, 즉, ① 국민적·문화적 정체성, ② 법 앞의 평등, 법의 안정성, 참여, ③ 자유, ④ 정의, ⑤ 연대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우산’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현대사회, 고도로 파편화되고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일련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할 때, 다문화 사회로서의 현대사회는 ‘갈등의 역설(paradox of conflict)’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사회는 한편으로 매우 강력한 갈등을 안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그것을 체제논리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수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Arenhoevel 2009, 22-23).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갈등(도시 대 촌락, 중심부 대 주변부, 종교, 지역 등)은 사회구조를 분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부분적으로 피를 흘리는 투쟁과 대립관계를 거치면서 나뉘대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현대사회에서 갈등 및 갈등해소의 양상을 바라볼 때, 예측불가능성, 비구조성, 우발성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의 갈등노선은 전통적인 분열(cleavage)과 엇갈린 상태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선형적인 궁극적 가치나 진리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권위적으로 설정된 결정을 의심할 바 없이 받아들이는 방식으

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다원주의 이론가인 프랭켈(Fraenkel)은 논쟁적인 부문과 더 이상 논쟁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구분한 적이 있다. 여기서 논쟁적인 부문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사회적 설계가 실현가능성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영역을 가리킨다. 그리고 논쟁적이지 않은 부문은, 가치·규범·절차를 포함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체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받아들이고, 이스턴(Easton)이 ‘확산적 지지(diffuse support)’라고 지칭한 것을 확보하고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분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에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벤하비브(Benhabib)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국가의 헌정원칙은 종종 특정한 민족적·종교적 소수집단(보기: 유럽의 집시, 기독교 종파, 정통유대교 집단, 이슬람교 집단)의 풍속습관과 모순관계에 빠지곤 한다. 따라서 법적·정치적·문화적·사회적 대립과 논쟁은 자유민주적 국가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다(Benhabib 2009, 173-179). 그런데 바로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논쟁적이지 않은 부문에서도 역시 그러한 대립과 논쟁이 벌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면, 강제결혼, 명예살인, 불법적인 사적(私的) 제재(응징)와 같은 현상은 자유민주적 헌정에 기반을 둔 국가에서는 더 이상 논쟁적이지 않은 부문에 속하는 것이 적어도 사회의 다른 일부분에서는 논쟁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현상은 합의와 논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징표이다(Arenhoevel 2009, 22-23).

### Ⅲ. 다문화 사회와 간문화 갈등

#### 1. 갈등이론의 핵심명제

여기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간문화 갈등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먼저 갈등이론의 의제에 속하는 핵심명제에 관해 기술하기

로 한다. 서두에서 이미 갈등이론의 의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그 의제에 속하는 핵심명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명제로 구분하여 정식화할 수 있다(Bonacker 2009, 13).

- ① 갈등은 사회관계를 형성 혹은 구성하기 위한 특정한 형태이다.
- ② 갈등은 현대사회의 수평적 분화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 ③ 갈등은 현대사회의 수직적 분화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 ④ 현대사회는 평화로운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화를 특징으로 한다.

#### (1) 사회적 관계형성에서 작용하는 특정한 형태로서의 갈등

사회적 관계는 서로 다른 구조를 취할 수 있으며, 갈등 그 자체가 그러한 관계의 유형을 산출한다. 사회집단은 갈등과 합의의 상호작용, 구획과 통합의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성된다. 따라서 비록 개개인이 갈등을 장애요인으로 느낄지라도, 사회관계 속에서 갈등은 생산적이고 통합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떨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짐멜은 갈등을 정상적인 사회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또한 사회적·집단적 소속감과 사회적 갈등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Bonacker 2009, 14).

#### (2) 수평적 분화의 결과 나타나는 갈등

현대사회는 상당 부분 수평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버(Weber)는 갈등이론의 의제를 위해 오늘날까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두 가지 구조적 요소를 밝혔는데, 그 하나는 '가치의 다신론(polytheism of values)'이며, 다른 하나는 자율적 가치영역의 분화이다.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치는 일반적인 타당성을 점점 더 많이 상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발성(contingency)에 대한 감각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규범적 지침과 생활형식의 충돌이 발생할 가

성이 많아진다. 그러한 규범 및 가치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어떤 실체적인 규범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 대신에 담론을 통한 공공적 갈등해소의 형태가 들어서며, 이것에 대한 승낙이 사회내부의 평화를 위하여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간단히 말해서, 점점 더 분화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실체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 혹은 토의가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적인 합의가 이렇게 소통을 통한 과정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베버가 자율적 가치영역이라고 지칭한 개별적인 사회적 부분영역이 서로 떨어져 나간다. 특히 루만(Luhmann)의 자기생산체제 (autopoietic system) 이론(Luhmann 1987; 쉬만크 2011a)과 연관시켜 볼 때, 수평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이 두 번째 구조적 특징은 현대사회가 구조적으로 갈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가 기능체제를 통하여 재생산된다는 사실, 그리고 기능체제가 자체의 기준에 따라 작동하고, 타당한 규범을 자율적으로 확정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예를 들면 경제와 생태, 경제와 정치 사이의 관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능적인 부분영역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갈등은 종종 분화형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보기: 사회적 불평등, 조절의 어려움, 생태적 위협)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그렇지만 기능적 분화는 동시에 갈등해소능력과 갈등에 대한 관용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능적 분화의 조건을 안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갈등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이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와 기능을 수반하도록 갈등해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보기: 법체제, 저항운동, 대중매체)도 역시 마련하기 때문이다(Bonacker 2009, 14-15; Liebe 2006, 365-366; Willke 1999, 63-64).

### (3) 수직적 분화의 결과 나타나는 갈등

현대사회는 수평적인 분화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분화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 혹은 지위로 분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Engels)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잠재성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으며, 이것을 사회변동이론과 결합시켰다. 이 맥락에서 특히 잠재적 모순에서 명시적 갈등으로의 이행이 갈등이론의 담론에서 곧잘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잠재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명시적 갈등 사이의 이행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렌도르프(Dahrendorf)는 갈등집단의 구성이론을 정식화하였다(브뤼제마이스터 2011). 어떤 조건에서 구성원들은 명시적으로 정식화된 이해관계를 표출하기 위하여 이익집단을 조직한다. 서로 대립하는 이익집단은 권력에 기반을 둔 지배의 역할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게 된다. 준(準)집단(quasi-group)에서 이익집단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① 조직화의 조건, ② 갈등해소의 조건, 그리고 ③ 구조변동과 직접 관련되는 조건의 세 가지 측면이 역할을 수행한다.

갈등집단의 형성에 있어서는 집단의 사회구조적 위치와 조직화의 가능성 및 능력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경험이 인정을 위한 집단적 요구로 전환되는가의 여부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와 상대적 결핍의 갈등잠재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르디외(Bourdieu)의 이론(쉬만크 2011b) 이외에 일련의 서로 다른 이론적 접근방안이 존재한다. 이 맥락에서 하이트마이어(Heitmeyer)가 제시한 사회해체이론(랑에 2011)과 호네트(Honneth)가 내세운 인정의 갈등이론(Honneth 1992)을 언급할 만하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보편주의적인 규범적 이해가 작용하는 조건에서 경제적, 법적·정치적, 문화적 무시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해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주의적인 규범 이해 그 자체는 인정을 위한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인정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사회집단은 경제적 참여, 정치적 권리, 사회적 존중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유효하게 만들고 관철시키려고 애를 쓴다. 그러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의 제도가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때 파괴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그 속에서 지위에 위협을 느끼거나 배제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차별적·적대적 행태를 보이게 된다(Bonacker 2009, 15-16; Mayer 2008, 27; Mecheril 2010,



21-23).

#### (4) 평화로운 갈등해소의 제도화

전근대적인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수평적·수직적 분화의 과정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갈등잠재성이 제고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즉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해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성장한다. 비폭력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조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제도가 규범적 지침과 기대의 안정성을 마련해 준다. 하버마스(Habermas)가 정식화한 바와 같이, 규범의 수신자가 동시에 스스로를 규범의 생산자(장본인)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규범적 지침과 기대의 안정성은 평화로운 갈등해소에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하면, 규범산출의 절차에 대한 합의, 근거(이유)에 대한 항변 및 청구의 가능성 보장은 갈등의 파괴력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헤밍 2011).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뒤르켐(Durkheim)이 명료화한 바와 같이, 그러한 제도적 규정과 조절은 또한 생활세계적인 연대의식에 의존하고 있다. 폭력에서 벗어난 갈등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상호인정은 제도적으로 명령을 내려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생활세계 수준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쉥하스(Senghass)는 바로 그러한 인정에 기반을 둔 문명적인 혹은 평화로운 정치적 갈등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전제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평화로운 정치적 갈등문화를 수립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다음 다섯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① 물리적 힘에 대한 국가의 독점기능 확보, ② 그 독점(즉, 물리적 힘에 대한 국가의 독점)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③ 능동적인 민주적 참여, ④ 기회균등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정의, ⑤ 감정의 통제 및 분화된 부분영역 사이의 상호의존 실현. 쉥하스는 여기에 평화로운 정치적 갈등문화를 포함하여, 이른바 ‘문명적 육각형(civilizational hexagon)’으로 평화를 위한 문

명적 기획(project)을 제안하였다(Bonacker 2009, 16-17).

## 2. 다문화 사회에서의 간문화 갈등

갈등은 대개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가 부딪히거나 충돌하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갈등은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는 ‘다중현실(multiple realities)’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의 해결·해소를 위한 협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통과 중재를 통하여 사회적·문화적 현실에 대하여 협상을 벌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갈등 및 갈등해소에 대한 건설적인 형태, 질적으로 다른 형태가 발생하며, 갈등의 변환을 통하여 긍정적인 상승(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간문화적 갈등은 일차적으로 문화적인 영역에 놓여 있는 현실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현실수준은 당사자가 경험하는 생활과 사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간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은 상당히 복잡적이다. 왜냐하면 주관적·개인적 인지 및 해석, 목표관념 및 행위가 문화적 특징을 띠고 있는 집단적 현실과 네트워크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Augsburger 1992, 17; Mayer 2008, 23-27).

하지만 사회구조적인 힘의 격차를 둘러싼 인정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민족적·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주제로 삼을 경우 이것은 오히려 갈등 회피전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자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가리키면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담론(tolerance discourse)’에 국한될 경우, 본래 더 중요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라는 외교적인 수사로 마치 간문화적 갈등을 이미 해소한 것처럼 간주할 수 있다.

간문화적 갈등을 다루면서 종종 관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화주의적 해석(culturalist interpretation)’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오히려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어떤 지위와 입장에서 문화적·민족적 측면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대개 다수집단에 속하는 지배집단은 자신의 국민적·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삼으면서, 자신의 ‘정상성 담론(normality discourse)’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배집단은 ‘사회통합의 담론(integration discourse)’을, 예를 들면, “당신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면, 우리의 경기규칙(즉, 주도문화, Leitkultur, leading culture)에 따라야 한다.”는 방식으로 ‘적응의 담론(adaptation discourse)’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보인다(Fechler 2010, 187-188; Mecheril 2010, 19-23).

이와는 대조적으로 힘이 약한 집단은 자신의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수반하는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상대방의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고, 구조적 차별의 경제적·정치적·제도적 측면을 문제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부르디외(Bourdieu)의 권력이론(1979)에 비추어 볼 때(쉬만크 2011b), 이러한 전략은 ‘상징적 권력’의 형태가 작용하는 관계와 상태 속에서 힘이 약한 집단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수집단의 대변자가 일정한 가치와 행동방식을 극히 정상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이것을 달리 바라보고 문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때 상징적인 구조적 권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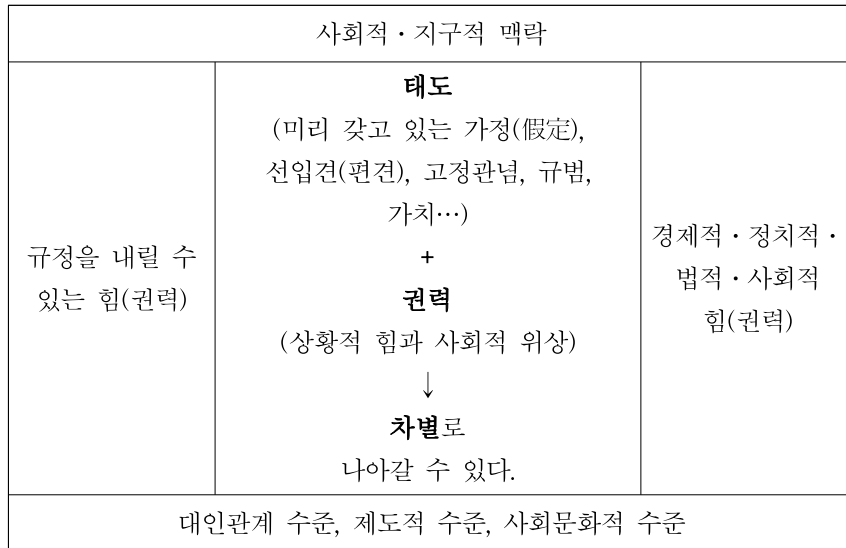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지배적인 집단은 소수집단의 일탈행동을 단순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거나 오만불손하다고 간주하기 쉬우며, 다른 한편으로 소수집단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힘이 약한 집단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들의 유일한 장점, 즉 도덕적 측면을 동원하고,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인종차별주의를 지적하면서 공론장에 들어설 수 있다(Weiss 2001, 104; Fechler 2010, 188-189). 이와 같이 비대칭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민족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전략을 강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에서 ‘평행사회(parallel society)’의 개념에 관해서는 정창화/허영식 2011, 222-226 참조).

<표 1>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민족적·문화적 전략

	자신의 민족·문화에 대한 인지	타자의 민족·문화에 대한 인지
<b>상위지위</b> (지배적 입장, 다수집단, 기득권을 가진 자)	간접적: 지배의 부인 ("나는 극히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직접적: 특권의 방어 ("우리의 규칙은 바로 그런 것이다.")	상대방의 심리에 대한 평가 절하 ("그들은 통합할 자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b>하위지위</b> (힘이 약한 입장, 소수집단, 국외자)	특별한 권리의 청구 혹은 자기 자신의 후퇴(즉, '평행 사회'로의 회귀) 정당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거나 정치쟁점화 ("그들은 오만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결국 인종차별이다.")

출처: (Fechler 2010, 188) 재구성

간문화적 갈등을 다루면서 권력관계(혹은 힘의 구조)를 주제로 삼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민족적·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편견·차별의 문제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태도 이외에 권력관계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경험지향 차별모형'은 대인관계 수준, 제도적 수준,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편견·차별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을 지구적·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Paproth 2009, 69-70; 허영식 2010, 243-247).



출처: (Paproth 2009, 69; 허영식 2010, 245 재인용).

**<그림 1> 경험지향 차별모형**

이 맥락에서 또한 간문화적 만남 · 접촉 · 상황 · 행위 · 소통 · 담론 · 상호작용 · 사업 · 갈등 따위를 포괄하여 부르는 추상적 개념인 ‘간문화성(interculturality)’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다차원적 관점에서 간문화성의 해석을 위하여 일종의 발견학적 모형(heuristic model)을 제시한 아우어른하이머(Auernheimer)의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여기서 소개하는 ‘간문화성의 해석모형’에 따르면, 권력의 비대칭성, 집합경험, 타자에 대한 심상, 그리고 문화적 차이(서로 다른 문화유형 혹은 스크립트(scripts))의 네 가지 차원이 간문화적 교차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 규정(definition of situation: 기대와 해석)에 이리저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갈등처리를 포함한 상호작용이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한편으로 민족적 ·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 다른 한편으로 사회구조적 힘의 격차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간문화적 장애와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권력의 비대칭성	⇔	상황규정 (기대와 해석)	⇔	상호작용의 잔행
집합경험				
타자에 대한 심상				
문화적 차이				

출처: (Auernheimer 2010, 46) 재구성

<그림 2> 간문화성의 해석모형

## IV.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문화와 간문화 증재

### 1.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갈등문화

갈등문화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처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문화를 가리키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연습을 통하여 체득된 것이며, 따라서 언제든지 사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와 조직은 왜 이와 같은 갈등문화를 필요로 하는가? 왜냐하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와 조직은 다양한 견해를 통해 도움을 얻기 때문이다. 적어도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가 새로운 생활형식·가치·이해관계에 대해 개방적일수록 그만큼 더 갈등이 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다. 거꾸로 사회가 폐쇄적일수록 결국 불가피한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다.

갈등문화와 관련하여 이제 갈등이론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한편으로는 현대사회가 어쨌든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따라서 생산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제(institutional mechanism)를 마련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물리적 힘에 대한 국가의 독점과 이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어느 정도의 분배정의 확보, 이해관계 조정의 절차, 쟁의의 중재 따위가 속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기제가 무조건 갈등문화의 발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갈등은 원칙적으로 파괴적인 진행과정을 겪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보다 더 건설적인 진행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의 특징은 바로 갈등이 건설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며, 갈등집단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갈등의 진행과정에서 서로를 동등한 권리를 가진 행위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서로 다른 기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갈등문화의 형성을 이제 우리는 집단적인 학습과정으로 기술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참여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선호가 그럴듯한(혹은 납득할 만한) 이유(근거) 때문에 다른 집단(또는 타자)의 반박이나 이의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비폭력적으로 해소된 갈등을 통하여 자극을 받은 집단적 학습은 갈등문화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갈등문화는 평화로운 갈등해소의 제도적 기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언제나 다시 새롭게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갈등문화는 한편으로 사회적 발전과 학습과정의 결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갈등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사회제도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갈등문화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명령을 내려 강요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Bonacker 2009, 17-18; Habermas 1992, 464-467).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과학적인 갈등이론과 사회통합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이의(異議)의 공공적 연출로 파악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갈등문화는 민주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일부분이다.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에서 의견의 차이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다. 사회통합의 성공적인 확보라고 하는 규범적인 목표를 염두에 둘 때, 갈등문화의 타당성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

갈등문화는 더 이상 어떤 가상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성(理性)의 다양한 양상 속에서 그것의 통일성을 가정하지 않으며, 주도문화(Leitkultur)와 같은 것을 갖고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대립관계의 구조적 조건에서 형성되는 상징적 통합자본(즉, 상징적으로 통합시키는 자본)에서 출발한다. 서로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집단이나 당사자가

논쟁에서 어느 정도 서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친숙한 갈등형태를 습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면, 논쟁과 갈등은 따라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한 가지 형식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미 짐멜(Simmel)은 갈등이 지나치게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논쟁의 기능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갈등, 즉 일방의 이득이 타방의 손해로 나타나는 제로섬(영합) 게임의 폭발력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회이론은 담론을 통하여 논쟁을 합리적인 합의로 이끌어 가거나(Habermas), 아니면 속의(심의)를 통하여 공정한 절차로 이끌어 가려는 시도(Rawls)를 보여주었다. 평화로운 갈등중재의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면서 갈등이론과 갈등문화의 옹호자들은 논쟁 그 자체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논쟁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논쟁을 통하여 그들이 서 있는 공동의 토대를 발견한다. 그리고 평화로운 갈등조정 속에서 이의(異議)의 정식화를 비로소 가능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공간이 형성된다.

공공적인 논쟁은 서로 다른 입장에게 스스로를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며, 논쟁의 결과 실현된 어떤 정책이나 프로젝트는 다시금 서로 다른 해석을 투사할 수 있는 영사막(스크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때, 살아있는 갈등문화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갈등해소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해석의 갈등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종종 논쟁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대립관계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의사형성을 할 수 있는 장소, 즉 민주적으로 구조화된 공간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치의 과제는 시민사회와 공론장에서 쟁점을 주제로 삼을 수 있고, 공공적인 논쟁에 참여한 자들이 정체성과 차이에 관한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놓여 있다. 사회 내부의 갈등은 대개 '의미론적인 권위(semantic authority)'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띠곤 하는데, 여기서 개인, 정체성을 수립하는 집단 및 공동체는 그들 자신의 위상을 규정하고, 또한 그들이 살고자 하는 조건을 규정하려고 한다. 이런 배경에서 바라볼 때, 예를 들면 다문화 사회에서 주



도문화와 같은 처방은 다수를 형성하는 주류집단이 ‘의미론적인 권위’를 영속화하는 시도라도 간주할 수 있다. 즉,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지배세력의 요구사항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Arenhoevel 2009, 23-24; 다문화주의와 주도문화의 긴장관계에 대해서는 (정창화/허영식 2012) 참조).

민주주의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자유로운 민주사회에서는 언제나 대안이 존재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하여 평화로운 논쟁, 그러나 동시에 열정적인 논쟁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갈등문화의 개념은 논쟁의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는 점, 그리고 논쟁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자신들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입장이 언제든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통찰이 민주적 갈등문화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물론 이러한 언명이 바로 상대주의에 대한 신봉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온갖 근본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 의미와 중요성이 놓여 있다. 이때 논쟁은 우선 입장의 탐색과 해명에 기여하며, 그 다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적 행위자의 편에서 바라볼 때, 논쟁을 무릅쓰거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거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자가 그러한 용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의 편에서 바라볼 때, 논쟁을 단순히 방해와 교란 혹은 의견의 불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물론 시민은 논쟁에 관여하고 있는 정치가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더 능동적인 역할을 떠맡아 스스로 참여하고, 갈등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문화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다원주의와 사회의 파편화 현상을 고려할 때, 공유된 가치를 전제로 하는 모든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의 한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공동체 차원에서

확고하게 공유된 가치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오히려 사회적·문화적 갈등을 그때그때 새로 기술하면서 말하자면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여기에 맞추어 새로 써나가는 일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르낭(Renan)이 공화정의 국민을 ‘매일 이루어지는 일반투표(plébiscite de tous les jours)’로 규정한 이유와 배경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Eder 2006, 42; 허영식 2010, 87).

또한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한편으로 문화적 민족(ethnos)만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힘들며,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민중(demos)만을 형성한다고 보기 힘들다. 현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통된 목표를 갖고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 또는 영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회로서 연상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다. 이런 사회진단을 고려한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오히려 ‘탈중심화된(decentered)’ 사람들 혹은 ‘중심을 서로 달리하는 편심(偏心)의(eccentric)’ 사람들로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모인 일종의 ‘사업공동체’라고 간주할 수 있다(Arenhoevel 2009, 24-25). 여기서 탈중심화(decentering)란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숙고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탈중심화된 주체는 자기 자신을 객체로 인지하고, 거리를 두면서 특정한 문화 혹은 하위문화의 담당자로 인지할 수 있다(Cohen-Emerique 2006, 317; 허영식 2010, 196).

## 2. 간문화 중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문화의 주요수단

간문화 중재의 개념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간학문적인 관점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다(Augsburger 1992; Liebe and Gilbert 1996; Busch 2005; Mayer 2005; Liebe 2006). 하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타당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문영역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의 중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간문화 중재는 대개 중재의 특정한 변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개인·집단·국가 사이에서 협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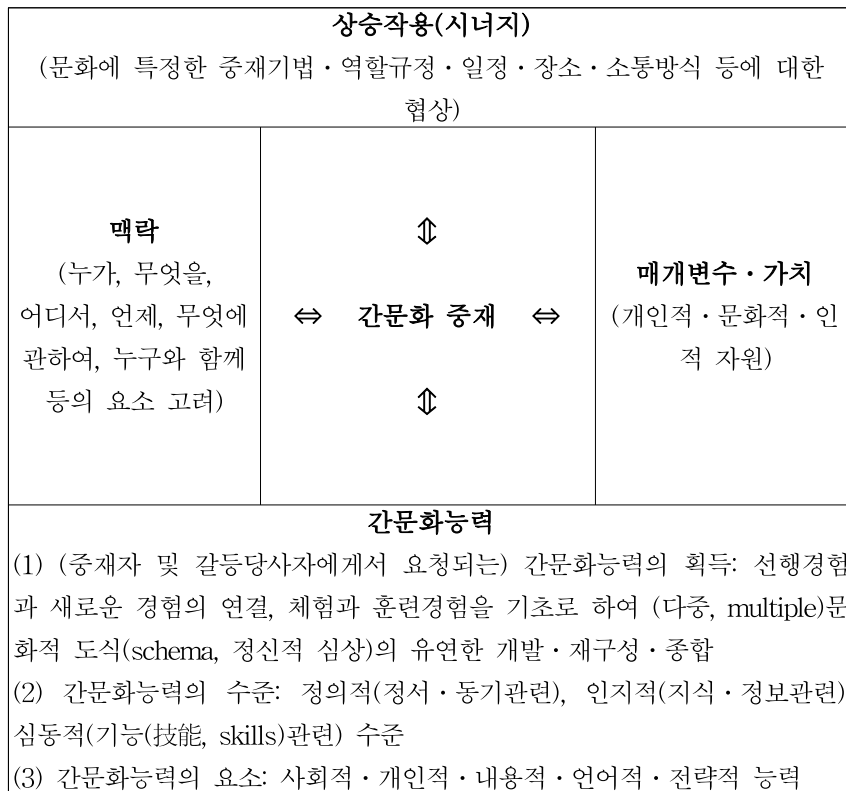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기서 중재는 간문화적 맥락에서 진행된다. 최근에는 ‘간문화 중재(intercultural mediation)’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한 인상(문화주의적 편협성과 특별영역의 암시)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간문화적 맥락에서의 중재(mediation in intercultural context)’라는 용어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Mayer 2008, 123; Fechner 2010, 173).

어쨌든 간문화 중재가 다른 보통의 중재와 구별되는 점은 우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협상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재는 동등한 혹은 유사한 문화적 조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가치지향을 전제로 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중재과정에서 이 근본적인 가치지향에 유의해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 협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중재의 과정에 새롭게 고려해야 할 협상의 수준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서로 다른 가치지향은 중재상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정의 진행 및 전체 절차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라 중재의 과정이, 내문화중재(intracultural mediation)와 비교해 볼 때, 더 복잡적이며, 중재자는 서로 다른 가치의 기반과 더불어 그것과 결합된 행동을 위한 합의에 대하여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간문화 중재의 특별한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독일인 사이에서 중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인과 독일인이 그들의 개인적인 측면과 더불어 문화에 특정한 측면을 갖고 들어온다면, 중재의 과정은 간문화적 과정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여기서 과정의 진행을 간문화 중재로 변화시키는 문화적 상승작용(시너지)이 나타날 수 있다(Mayer 2008, 123).

간문화 중재는 특히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안을 제공한다. 이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화적 현실을 구성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문화특정적(문화에 특정한, culture-specific) 의미·경험·평가·해석뿐만 아니라, 초문화적(transcultural) 의미·경험·평가·해석에 대해서도 역시 명료화 작업을 수행하고 성찰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재자는

간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타문화의 측면을 중재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Mayer 2008, 131).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마이어(Mayer)가 제시한 간문화 중재모형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Mayer 2008, 132) 재구성

**<그림 3> 간문화 중재모형**

간문화 중재에서 문화적 한계(장벽과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정답’이나 ‘왕도’를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일은 적어도 간문화 중재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여

기서 건설적인 갈등해소란 물론 폭력·완력의 고조를 예방하고, 제3자에 대한 공격성을 막고, 자기과괴적인 갈등회피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ayer 2008, 209).

- ① 갈등당사자가 가능하면 동등한 가치나 지위를 갖고 서로 관계를 맺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 ② 자기주장의 의미에서 당사자가 동등한 힘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의 원인과 기반을 확인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 ④ 폭력·완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갈등해소에 기여하거나 공격성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간문화 갈등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적·문화적 측면에 국한시킬 경우 사회구조적인 권력관계를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면서, 간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중재, 즉 간문화 중재에 관여하고 있는 중재자는 특별히 차이와 지배(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신장시키면서 ‘간문화 중재능력(intercultural mediation competence)’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차이에 대한 감수성

세계화와 이주운동의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는 점점 더 그것이 속해 있던 영토와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익숙해 있던 민족적·국민적 분류방식에서 벗어나 초국가(transnational) 정체성, 혼성(hybrid) 정체성, 경계가 불분명한 정체성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성의 대상도 바뀌는 경향이 있다. 다중정체성(multiple identity)이나 다중소속감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당사자들은 인위적으로

명백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한다. 경계와 소속이 불분명한 세계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민족·출신 배경 따위가 다시 중요한 준거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간문화 중재에 관여하고 있는 중재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특정한 민족·문화의 측면을 강조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비평적·분석적 안목을 갖추는 일이 기본적으로 요청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그러한 측면에 대하여 자기기술(self-description)을 할 때 일단 경청하려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그 자기기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스스로 명료화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재자는 당사자를 진지하게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해명과 명료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정서, 이해관계, 필요와 욕구, 가치, 구조적 조건 등)를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다(Fechler 2010, 192-193).

## (2) 지배에 대한 감수성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 사회에서의 간문화 갈등과 연관시켜 볼 때, 중재가 힘(권력)의 구조적인 비대칭관계를 철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대인관계수준에서 파괴적인 영향과 귀결을 제한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 중재자는 양편(힘이 강한 개인 혹은 집단과 힘이 약한 개인 혹은 집단) 모두를 뒷받침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의 비대칭성을 일단 거명 및 인정하고, 참여자 혹은 당사자로 하여금 보다 더 정확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그동안 무시하거나 소홀히 다루었던 갈등의 측면을 깨닫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특히 상대방의 관점을 취득(perspective-taking)하고 자신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관점을 변경(perspective-changing)할 수 있다면, 양편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을 상당히 줄어든게 할 수 있다. 특히 힘이 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당사자에게는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개인적인 행위의 자유여지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바라볼 때, 중재자는

자신의 중재행위를 통해서, 중재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 보다는 더 큰 긍정적 성과에 도달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직개발로서의 중재’라는 의미에서 시야를 확장한다면, 주어진 조직·기구 내에서 갈등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경영자·관리자에게 환류(피드백)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의 제도적 형태를 보여주고 변화의 과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간문화개방(intercultural opening), 다양성관리(diversity management), 차별철폐(anti-discrimination) 등과의 교차점(연결고리)을 확인할 수 있다(Fechler 2010, 193-194; Auernheimer 2010, 58; Doege 2008; Zacharaki et al. 2009; 정창화/허영식 2011). 또한 ‘간문화성(interculturality)’을 차이와 지배(권력)의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모든 간문화상황과 간문화행위를 고려할 때 차이현상과 동시에 지배(권력)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그 두 가지 측면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Mechril 2010, 30-32).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를 명료화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논의한 사항의 전개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핵심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이 글의 개요를 간단히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문제: 갈등의 역설</b>	
- 다문화 사회는 매우 강력한 갈등잠재성을 안고 있지만, -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체제논리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수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음	
↓	
<b>갈등이론의 의제와 핵심명제</b> - 의제: 갈등의 기능성·역기능성과 관련하여, 평화로운 갈등해소(혹은 정치적 갈등문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제도적 조건에 대한 질문 - 핵심명제:	<b>다문화 사회에서의 간문화 갈등</b> - 다중현실 - 민족적·문화적 차이와 다양성 - 사회구조적인 힘의 격차를 둘러싼 인정의 문제 -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민족적·문화적 전략

① 사회적 관계형성에서 작용하는 특정한 형태로서의 갈등 ② 수평적 분화의 결과 나타나는 갈등 ③ 수직적 분화의 결과 나타나는 갈등 ④ 평화로운 갈등해소의 제도화 ↓	- 경험지향 차별모형 ↓
↓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b>갈등문화</b> - 갈등문화의 양면성: 갈등문화는 사회적 발전과 학습과정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갈등을 규제·조정하는 사회제도는 거꾸로 갈등문화에 의존하고 있음 - 갈등문화의 근본적인 토대: 자기 자신의 입장이 언제든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통찰(관점취득과 관점변경의 중요성)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탈중심화된 사람들이 구성한 일종의 사업공동체 ↓	
↓	
<b>간문화 중재</b>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문화의 주요수단) - 간문화 중재모형(상승작용·맥락·매개변수·간문화능력) - 간문화 중재능력(차이와 지배에 대한 감수성 포함) - 간문화개방·다양성관리·차별철폐와의 연결고리	

**<그림 4> 다문화 사회의 통합관점에서 바라본 간문화 갈등과 간문화 중재**

## V. 결론

이 글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관점에서 특히 간문화 갈등 및 간문화 중재의 개념과 함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갈등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삼아 간문화 갈등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어서 간문화 갈등을 다루기 위한 방책으로서 갈등문화 및 그 주요수단인 간문화 중재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진술할 수 있다.



(1)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문화 사회로서의 현대사회는 ‘갈등의 역설’이라는 특징을 안고 있다. 한편으로 다문화 사회는 매우 강력한 갈등을 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체제논리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수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2)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간문화 갈등에 대하여 비평적·분석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이론의 의제와 핵심명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적 갈등이론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 의제는 갈등의 기능성 및 역기능성과 관련이 있으며, 평화로운 갈등해소 혹은 정치적 갈등문화를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적·제도적 조건에 관한 질문이 갈등이론의 의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의제에 속하는 핵심명제는 사회적 관계형성에서 작용하는 특정한 형태로서의 갈등, 수평적·수직적 분화의 결과 나타나는 갈등, 평화로운 갈등해소의 제도화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다.

(3) 다문화 사회와 간문화 갈등의 주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선 갈등은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는 ‘다중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간문화 갈등의 주제를 다룰 때에는 민족적·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힘의 격차를 둘러싼 인정의 문제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민족적·문화적 전략을 연결시키고, 경험지향 차별모형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4)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갈등문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갈등문화의 양면성에서 출발할 수 있다. 갈등문화는 사회적 발전과 학습과정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갈등을 규제·조정하는 사회제도는 거꾸로 갈등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갈등문화의 근본적인 토대는 자기 자신의 입장이 언제든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통찰에서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관점취득과 관점변경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 맥락에서 또한 다문화 사회를 탈중심화된 사람들이 구성한 일종의 사업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5)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문화의 주요수단인 간문화 중재에 초점을 맞

준다면, 상승작용·맥락·매개변수·간문화 능력의 요인과 측면을 고려한 간문화 중재모형을 참고할 수 있으며, 차이와 지배(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포함한 간문화 중재능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야와 지평을 확대할 경우, 간문화 중재는 더 나아가서 이미 여러 간문화적 행위영역과 실천(교육, 사회복지, 경제, 정치, 예술·문화, 종교, 대중매체, 학계, 개발협력사업, 관광여행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간문화 개방·다양성 관리·차별철폐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연결고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 정창화·허영식(2011).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착근을 위한 다양성 관리.” 『유럽연구』, 제 29권, 제3호, pp. 217-243.
- 정창화·허영식(2012).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주의와 공화주의적 주도문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 30권, 제1호, pp. 73-101.
- 허영식(2010). 『다문화 사회와 간문화성』, 서울: 강현출판사.
- 랑에 슈테판(2011). “근대의 아노미적 그늘 - 빌헬름 하이트마이어의 사회해체론.” 쉬만크 우베·폴크만 우테 편. 『현대사회를 진단한다. 사회진단의 사회학』, 김기범 외 역, 서울: 논형, pp. 133-150.
- 브뤼제마이스터 토마스(2011). “하층계급과 다수계급 간의 근대적 사회갈등 - 랄프 다렌도르프의 시민사회 진단.” 쉬만크 우베·폴크만 우테 편. 『현대사회를 진단한다. 사회진단의 사회학』, 김기범 외 역, 서울: 논형, pp. 277-291.
- 쉬만크 우베(2011a). “생태학적 위협, 요구인플레와 배제의 연결고리 - 기능분화의 후속문제에 대한 니클라스 루만의 관찰.” 쉬만크 우베·폴크만 우테 편. 『현대사회를 진단한다. 사회진단의 사회학』, 김기범 외 역, 서울: 논형, pp. 151-171.
- 쉬만크 우베(2011b).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앙 - 사회적 배제 경향에 대한 피에르 부르디외의 분석.” 쉬만크 우베·폴크만 우테 편. 『현대사회를 진단한다. 사회진단의 사회학』, 김기범 외 역, 서울: 논형, pp. 223-242.
- 헤밍 랄프(2011). “체계역동성, 생활세계와 시민사회 - 위르겐 하버마스 사회이론의 시대진단적 관점.” 쉬만크 우베·폴크만 우테 편. 『현대사회를 진단한다. 사회진단의 사회학』, 김기범 외 역, 서울: 논형, pp. 71-89.
- Arenhoevel, M.(2009). “Streitkultur in der Demokratie.” *kursiv - Journal fuer politische Bildung*, No. 3, pp. 20-25.
- Auernheimer, G.(2010).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mehrdimensional

- betrachtet, mit Konsequenzen fuer das Verstaendnis von interkultureller Kompetenz.” Auernheimer, G.(ed.). *Interkulturelle Kompetenz und paedagogische Professionalitaet*. Wiesbaden: VS, pp. 35-65.
- Augsburger, D.(1992).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Kentucky: John Knox Press.
- Benhabib, S.(2009). *Die Rechte der Anderen. Auslaender, Migranten, Buerger*. Frankfurt/M.: Suhrkamp.
- Bonacker, T.(2009). “Warum Gesellschaften Konflikte brauchen.” *kursiv - Journal fuer politische Bildung*. No. 3, pp. 12-19.
- Bourdieu, P.(1979). *Entwurf einer Theorie der Praxis*. Frankfurt/M.: Suhrkamp.
- Busch, D.(2005). *Interkulturelle Mediation*. Frankfurt/M.: Peter Lang.
- Cohen-Emerique, M.(2006). “Der Kulturschock als Weiterbildungsmethode und als Forschungsinstrument.” Nicklas, H. et al.(ed.). *Interkulturell denken und handeln. Theoretische Grundlagen und gesellschaftliche Praxis*. Frankfurt/M.: Campus, pp. 317-327.
- Doegge, P.(2008). *Von der Antidiskriminierung zum Diversity-Managemen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Eder, K.(2006). “Ethnien, Nationen, Zivilisationen, Interkulturalitaet.” Nicklas, H. et al.(ed.). *Interkulturell denken und handeln. Theoretische Grundlagen und gesellschaftliche Praxis*. Frankfurt/M.: Campus, pp. 37-46.
- Fechler, B.(2010). “Interkulturelle Mediationskompetenz.” Auernheimer, G.(ed.). *Interkulturelle Kompetenz und paedagogische Professionalitaet*. Wiesbaden: VS, pp. 173-199.
- Habermas, J.(1992). *Faktizitaet und Geltung. Beitra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M.: Suhrkamp.
- Honneth, A.(1992). *Kampf um Anerkennung. Zur moralischen*

- Grammatik sozialer Konflikte*. Frankfurt/M.: Suhrkamp.
- Liebe, F.(2006). "Mediation im politischen Feld." Nicklas, H. et al.(ed.). *Interkulturell denken und handeln. Theoretische Grundlagen und gesellschaftliche Praxis*. Frankfurt/M.: Campus, pp. 358-368.
- Liebe, F. and Gilbert, N.(1996). *Interkulturelle Mediation - eine schwierige Vermittlung*. Berlin: Berghof Forschungszentrum fuer konstruktive Konfliktbearbeitung.
- Luhmann, N.(1987). *Soziale Systeme*. Frankfurt/M.: Suhrkamp.
- Mayer, C.-H.(2005). *Mauern aus Glas. Suedafrikanische Narrationen zu Konflikt, Differenz und Identitaet*. Muenster: Waxmann.
- Mayer, C.-H.(2008). *Trainingshandbuch Interkulturelle Mediation und Konfliktloesung*. Muenster: Waxmann.
- Mecheril, P.(2010). "Kompetenzlosigkeitskompetenz. Paedagogisches Handeln unter Einwanderungsbedingungen." Auernheimer, G.(ed.). *Interkulturelle Kompetenz und paedagogische Professionalitaet*. Wiesbaden: VS, pp. 15-34.
- Paproth, F.(2009). "Gesundheit und Pflege." *kursiv - Journal fuer politische Bildung*. No. 2, pp. 62-72.
- Weiss, A.(2001). "Was macht interkulturelle Konflikte aus? Kulturelle Differenzen, ethnische Identitaeten und die Frage der Macht." *Journal fuer Konflikt- und Gewaltforschung*. No. 2, pp. 87-110.
- Willke, H.(1999). *Systemtheorie III. Interventionstheorie*. Stuttgart: Lucius & Lucius.
- Zacharaki, I. et al.(2009). *Praxishandbuch Interkulturelle Kompetenz vermitteln, vertiefen, umsetzen*. Schwalbach/Ts.: Wochenschau.

| 논문투고일: 2012년 05월 31일 |

| 논문심사일: 2012년 07월 18일 |

| 게재확정일: 2012년 07월 27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2 (2012)

## **Intercultural Conflict and Med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Young-Sik Huh**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result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intercultural conflict and med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To arrive at this aim, the researcher dealt with the following themes: the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society and intercultural conflict, conflict culture and intercultural medi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bottom line of this paper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Modern society as a multicultural society can be characterized by a paradox of conflict. To understand the intercultural conflict in multicultural society, one has to refer to the conflict theory regarding its agenda and central themes. In coping with intercultural conflict, not only the ethnic-cultural differences and diversities but also the problems of recognition surrounding the social-structural power have to be duly considered. Regarding the conflict culture for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one has to pay attention to the ambivalence and fundamental point of conflict culture. In relation to the intercultural mediation as a main instrument of conflict culture for social integration, it is desirable to refer to the model of intercultural

mediation and to the intercultural mediation competence. Last but not least, intercultural mediation can be interconnected, on a broader horizon of interculturality, with the projects and discourses about the intercultural opening, diversity management, and anti-discrimin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Intercultural Conflict, Conflict Culture, Intercultural Mediation